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채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변제금의 납입통지, 징수, 분할납부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주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 변제금의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 변제금의 징수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의 준용 조항 열거 및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11조의3)
- 사업주가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을 규정(안 제11조의4)

나.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의 국세채납처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변제금의 납입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의3(변제금의 징수)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전적가격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변제금에 우선하는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법인인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변제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 그 밖의 기관에 사업주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되지 않은 변제금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변제금 등의 분할 납부) ① 사업주는 납부 기한이 지난 변제금(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변제금의 납입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u><신 설></u>				
		제11조의3(변제금의 징수)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변제금에 우선하는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법인인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변제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 그 밖의 기관에 사업주의 행방 또는 재산

<신 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1의2. (생략)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되지 않은 변제금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변제금 등의 분할 납부) ① 사업주는 납부 기한이 지난 변제금(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
 -----.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 외한다.	----- ----- -----.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072